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송도국제도시 A1블록)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 **국토교통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관련한 서류접수 방법을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 합니다.(※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불가)**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방문접수(분양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 단, 분양 사무실에서 청약 신청 접수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 최고38층, 25개동 및 총 3,100세대 中 조합원자격상실 189세대 일반분양**
※ 본 아파트는 2회 분할 공급하며 1회차 117세대(조합원 탈퇴, 제명세대)를 제외한 2회차 72세대(소송, 기각세대)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공급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2회차 입주자 모집승인 이후 공급 예정)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세대수 : 총 7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 : 공급세대수의 10%범위 내 공급**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타입별 세대수**

구분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회차(총117세대 10%범위 내)									
주택형	74A	74B	84A	84B	84C	84D	84E	84F	84G	합계
일반분양 세대수	3	18	34	18	10	9	16	7	2	117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수 (확정자)	-	1	3	1	1	-	1	-	-	7
예비자	-	(5)	(15)	(5)	(5)	-	(5)	-	-	(35)

※ 괄호( )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2.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 분	일정(예정)	내 용
특별공급 사전접수 (우편접수만 가능)	2021년 1월 12일 (화)까지 *2021년 1월 06일 (수) 당사 홈페이지 공지	* 우편접수 주소(등기발송 필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 위치) * 우편 소인날짜 기준 인정 : 2021년 1월 12일 (화)까지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입주자모집공고	2021년 1월 29일(금)	* 일간신문 / 분양 홈페이지 (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특별공급 접수 (인터넷 청약)	2021년 2월 08일(월) (08:00~17:30)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8:00~17:30)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1년 2월 18일(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체결	2021년 3월 08일(월) ~ 3월 10일(수), 3일간	* 장소 : 분양사무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 위치) *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사홈페이지 참고 * 시간별 예약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으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우편접수(등기)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사업주체 대표번호(032-859-0190) 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사전접수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통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1통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조대조필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재직회사	법인신청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재직회사	
	○		재직증명서 1통	재직회사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 제출 (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무주택 서약서	본인	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기입일 및 종류를 확인 가능한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 이용시간 08:00~17:30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인터넷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내국인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대리인 불가 / 용도: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서명)	본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상세발급)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본인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국내거소 사실확인서	본인	재외동포 신청의 경우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상기 모든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2021.01.29(금)** 3개월 이전까지 발행분(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모든 내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상세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외에 다른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재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붙임. 1.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2. 무주택 서약서 3.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9(금)예정**)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따라 2018.12.11.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의 요건을 갖춘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에게 제출 후,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3.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자(확정자, 예비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참고)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4. 사업주체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당사 홈페이지 내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별도 게재 예정)
5. 사업주체에 대상자로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6.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분양사무실 접수는 불가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우편접수(등기)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일 이후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1,2순위)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처리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모두 접수가 가능하나,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 신청은 1세대 1건만 가능하므로 중복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며,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확정자, 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된 타입 외 다른 타입 청약 및 당첨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타지역 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안내문에 기재된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인사기록카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공급되는 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2020.01.29.(금)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일하며,「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전매제한 기간 내 전출 또는 퇴직,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취소가 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재공급하게 됩니다)

■ **신청자의 타 지역으로 발령(인천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미충족 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종전 근무 기업의 근무기간 합산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외국인 투자(A) 기업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현재 외국인 투자(B) 기업 10개월 근무 → (B) 기업 근무기간만 인정**

예시2) 타 지역의 지사로 발령받은 근무자 신청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외국인 투자(A) 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고 있으나, 1년 이내에 타 지역, 지사(인천경제자유구역 외 지역)로 발령받아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032-859-0190 **홈페이지 : 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붙임.1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 소			
연 락 처	자택 : ( ) - / 휴대폰 :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근 무 부 서		직 책 및 직 위	
소 재 지 주 소			☏( ) -
근 무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년 월		

2. 가족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희망타입 √체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	☐ 74B ☐ 84A ☐ 84B ☐ 84C ☐ 84E

4. 첨부서류

공통서류	확인	내국인	확인	외국인	확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대조필)**	☐	1. 신분증 **(사본)**	☐	1. 외국인등록증	☐
2.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2. 국내거소신고 사실 확인서	☐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신청인 경우)**	☐	3.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서명)**	☐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인 경우)**	☐	4.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5.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법인인감 날인)**	☐	5.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단 세대 분리된 경우 에 한함)**	☐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속업체 법인인감 날인)**	☐	6.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7. 주택 특별공급신청서 **(소속업체 법인인감 날인)**	☐	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8. 무주택서약서 **(신청인 본인인감 날인)**	☐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청약통장가입내역→인쇄)**	☐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번호전체포함**	☐				

※ 해당사항에 괄호 안에 "√"으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 _____ 신 청 인 : _____ (인감날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 _____ **(소속업체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붙임.2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송도 더샵마리나베이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		
성 명	(인)	신청 주택형	☐ 74B ☐ 84A ☐ 84B ☐ 84C ☐ 84E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1.29.(금)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신청인 인감날인 (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신청인 인감날인 (인)

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_____(신청자 인감날인)

대리 신청시 대리인 :_____(대리인 인감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수집 · 활용 동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사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 미동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 소	시 구 동		
연 락 처	자택 : ( ) - /	휴대폰 : - -	

■ 개인정보 수집·활용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개인정보의 수집·활용항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 상 기입된 신청자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목적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
개인정보의 보유·활용기간	분양완료 후 30일 이내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실 경우 분양정보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불가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_____ (인감날인)